

서울고등법원 2020. 6. 24 선고 2019나2044515 판결 [공사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론

담당변호사 신정민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임용묵

변론 종결 2020. 5. 8.

판결 선고 2020. 6. 24.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6. 선고 2018가합519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2019. 5. 31.까지는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2쪽 9행, 13행, 14행, 15행의 각 "C"를 모두 "O"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내지 보충 판단

가.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와 피고 및 F은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른 직불합의를 하였고, 원고와 F 사이에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346,000,000원으로 정산하면서 F이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더 이상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직불합의에 동의하지 않아 이 사건 합의서(을 제2호증)에 날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하여 F이 원고에게 하도급법 제1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이 이 사건 합의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F과 O 및 피고 사이에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F은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직불합의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F이 2018. 3.경 피고 및 O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승계계약 및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토지들에 관한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발주자 지위를 승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차입형 토지신탁계약특약사항 제13조 제4항은 "공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는 모든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서, 기도래 하도급대금 완납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F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고, F은 검토 후 해당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비를 직불 처리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청구권 행사 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F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비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F은 피고로부터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직접 지급 요청을 받은 경우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의 요건을 구비한 하도급업체들에 대해서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이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직불합의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F이 이 사건 합의서에 날인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 및 F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 내용과 같은 직불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F이 이를 추인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합의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합의서제5조의 해석에 관한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날인한 후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차례지급받는 등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거나 추인할 것이라는 신뢰를 만들어 놓고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제기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7. 8. 25. 피고와 이 사건 수장공사를 계약금액2,6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6. 11. 피고 측 현장소장 M로부터 공사완료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상 채무를 부담하는 점과 F은 이 사건 합의서 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날인하지 않은 점 및 피고의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와 F 사이에 정산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신뢰가 피고에게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안승훈, 판사 구태회